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7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이헌승·서일준·조경태

김정재 · 서범수 · 윤상현

이상휘 · 김기현 · 송석준

정성국 • 박덕흠 • 강선영

성일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 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 2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u>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u>수 있다.</u>